



대구대학교와 공군 군수사령부 간의 상호 교류 합의서



제1조(목적) 이 합의서는 공군 군수사령부와 대구대학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 간 교류·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임) 양 기관의 장은 이 합의서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.

제3조(교류·협력분야)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교류·협력한다.

1. 학술·기술 관련 정보교환 및 공동 연구
 2. 상호 보유 장비에 대한 사용 및 실습 지원
 3. 공학, 기술 적용현장 및 연구분야 견학·실습 지원
 4. 학술·기술 관련 세미나, 회의, 심포지엄 등 개최 시 상호 협력
 5. 국가관, 안보관, 인성 함양을 위한 현장 견학 및 강연 지원
 6. 소속원의 직무능력 및 개인역량 향상 교육 지원 협력
 7. 양 기관이 개최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
 8. 제1호 내지 제7호 외에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협력
- ② 교류·협력 관련 실무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.

제4조(보안 및 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 교류 및 협력과정 간에 양 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, 협력과정 중에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동일하다.

제5조(지적소유권) 양 기관에 상호 제공된 기술자료 및 정보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재원조성 및 지원) 양 기관은 교류에 필요한 재원조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, 별도 소요경비 발생 시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7조(효력발생일 및 유효기간) ① 이 합의서는 양 기관의 서명권자가 최종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② 이 합의서는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. 다만,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갱신된다.

제8조(합의서 정기검토, 수정 및 폐기) ① 양 기관은 매년 1회(5월) 이 합의서에 대해 정기검토를 실시한다.

② 이 합의서는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, 변경 또는 폐기될 수 있다.

제9조(해지권의 유보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서면에 의한 통지로 즉시 이 합의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1.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전쟁, 사변, 기타 중대한 작전상의 이유로 인하여 이 합의서를 유지함이 국가방위 상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
3.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10조(합의서 이견에 대한 해석) 이 합의서 해석에 있어 양 기관의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11조(보관) 이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2조(연락처) 양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.

1. 공군 군수사령부

(우) 4105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 사서함 304-101호

군수사령부 계획처 (전화) 053-989-1210

2. 대구대학교

(우)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(성산흘 4층)

대구대학교 사회공헌팀 (전화) 053-850-5021

2021. 6. 29.

대 구 대 학 교
총 장 김 상 호

김상호

공 군 군 수 사 령 관
공군소장 윤정배

윤정배